A large illustration of a diverse group of people, including men and women of various ages and ethnicities, smiling. They are wearing different styles of clothing, such as suits, blouses, and traditional Korean attire. The background is white with some faint patterns.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한 대학 만들기  
우리모두 함께해요

# 00 CONTENTS

- 01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 \_ 04
  - 1. 성희롱이란?
  - 2. 성폭력이란?
  - 3. 성희롱 판단기준
  
- 0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 \_ 06
  - 1. 관계별
  - 2. 상황별
  
- 03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주체별 예방 \_ 10
  - 1. 기관장
  - 2. 교수, 직원
  - 3. 학생
  
- 04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별 대응 \_ 13
  - 1. 성희롱
  - 2. 데이트 성폭력
  - 3. 스토킹
  - 4. 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 5. 성폭행(강간 및 강제추행)



#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한 대학 만들기 우리모두 함께해요



## 05 학내 성평등센터를 통한 대응 \_ 19

## 06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및 지원기관 \_ 22

1. 비사법적 권리구제
2. 사법적 권리구제
3. 외부 지원기관

## 07 피해자 주변인, 교수 역할 \_ 24

1. 주변 지인의 역할
2. 학과 교수의 역할

## 08 2차 피해와 예방 \_ 25

1. 2차 피해 정의
2. 2차 피해 유형
3. 2차 피해 대응

## 09 A Brief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_ 27

# 01

##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

### 1. 성희롱이란?

- ✔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성폭력이란?

-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성폭력의 유형 : 강간(성폭행), 강제추행(성추행), 유사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성희롱(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외(2014).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 3. 성희롱 판단기준

-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 ※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이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
- ✔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동거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후배간이나 사제지간과 같은 위계적인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우리대학 규정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대학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규정번호4-3-13)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 성희롱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 02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유형

### 1. 관계별

#### 1) 학생·학생

-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 성적 질문, 성적 비하 발언,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의상, 행동, 외모나 몸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 공공장소에 성적 대상화하는 포스터나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성생활을 묻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 학내 행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혐오감,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경우

**case1** 조별 모임 장소에서 남학생 A는 동기인 여학생 B에게 “앞뒤가 구별되지 않는다”, “볼륨이 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남학생 C에게 “네가 더 볼륨이 있다”, “너희 둘이 바뀌라”라는 말 등으로 불쾌감을 주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 사이에, 장난인데”라는 말을 하였다.

**case2** 학과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선배 N이 후배 K에게 다가갈 말을 걸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게 후배 K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희롱 하였다.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안 선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옮겼다.

**case3** 학과 동기 남녀 5명이 MT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중 남학생 L과 S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학생 M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을 하였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였다.

**case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MC를 맡은 학생 H가 야동배우 이름 말하기 게임을 진행하고, 함께 사회를 보고 있는 여학생을 가리키며 “이기는 학생에게 상품으로 드린다”는 등의 발언으로 불쾌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사 참석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 2) 교수·학생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교수의 권위, 학점, 연수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적 요구를 하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인 언행으로 불쾌하거나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case1** 교수C는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학생에게 “어제 밤에 뭐하느라고 늦냐”고 하며 “남자친구랑 있었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의 발언으로 해당 학생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다.

**case2** 연구실에 상담을 온 학생에게 교수 A는 “전부터 네가 맘에 들었다”, “나랑 사귀자”,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 추행하였다. 거부하지 못하고 연구실을 나온 학생이 신고하였고, 이후 해당 교수 A는 강의에서 배제 된 이후 학교 측의 조사에 따라 파면되었다.

**case3** 교수 B는 서류 사인을 받으러 온 학생에게 문서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며,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에게 피로를 풀어준다며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고, 나에게도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며 학생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하였다.

**case4** 강의시간에 교수 E는 “넌 예쁘게 공부도 잘한다”, “넌 개그맨 해야 할 얼굴이다”, “앞으로 걱정된다”, “애인은 있니?”라는 말들로 특정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하였고,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자 “딸 같아서 그런다”며 대답하였다.

### 3) 직원·학생(외부기관실습)

- 실습이나, 업무 활동 중에 성차별적, 성적 비하발언을 하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 일방적인 성적 언행으로 불쾌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나 성추행으로 실습이나 학업을 방해하는 경우
-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case1** 실습 업무 중 대상자에게 업무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더 예쁘다”, “나도 부드럽게 안내해 달라”, “너에게 안내받으면 밤에 잠들지 못할 것 같다”라는 필요하지 않은 성적인 발언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자, 실습확인서나 실습 평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말로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과 불쾌감을 주었다.

**case2** 학생 A는 실습기관 사무실에서 실습일지를 작성하는 중 “여자가 타는 커피가 맛있지”라며 커피를 요구하는 담당자에게 “저는 실습을 하러 온 것이지, 커피 타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요즘 애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case3** 실습이 늦게 끝나고 집에 태워주겠다고 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실습생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너도 나에게 관심 있는 것 아니었냐”, “나랑 친해지면 앞으로 지내기 편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 날 사과를 요청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상황별

### 1)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관계를 이용해서 성적인 착취, 추행, 강간 등을 하는 경우
- 데이트 관계에서 폭언, 욕설 등을 하는 경우
- 행동에 제약을 가하며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경우
-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case1** A男과 B女는 서로 연인 사이인데 데이트 도중 A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B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A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B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는 않았던 이 사건은 강간죄가 인정되어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11. 2006노711 판결)

**case2** 학생 A는 남자친구가 계속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기도 했다. A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남자친구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응하게 되었다.

**case3** H는 자신을 통제하는 남자친구를 견디기 힘들어 헤어지고 싶다. 그래서 이별을 고하자 남자친구는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H는 이런 남자친구가 무섭고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면 정말 자살시도를 할까봐 더는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 2) 스토킹

-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 접촉 시도, 관심 표명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경우
-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괴롭히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case1** 남학생 K는 여자 친구인 S와 헤어진 후, 주변 친구 및 선후배에게 “우리는 아직 사귀고 있다”, “S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 “S도 날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S의 강의실과 집으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행위를 하였고, “다시 사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하였다.

**case2** 선배 B男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후배 C女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강의실과 기숙사로 찾아와 생활을 방해한 것은 물론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귄 수 없다”며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C는 공포감을 느꼈다.

**case3** J는 사귀는 중 과도하게 집착을 보이며 폭력을 일삼는 애인인 Y와 헤어진 후, 새벽 시간에도 끊이지 않는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타인의 전화번호로까지 연락하였다. 그리고 J의 사진을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사생활 침해를 하였다.

### 3) 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 SNS나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 성관련 욕설 등의 글을 올리거나 게재하는 경우
- 일방적인 가상 성관계 요구나 진행 등을 찍지나 이메일 혹은 대화를 통해서 전송하는 경우
- 온라인 그루밍(성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 폭로를 막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
- 사이버공간 내 성적인 괴롭힘(단톡방 내 성희롱 및 신상정보 게재 등)의 경우
- 성적 촬영을 비동의로 촬영하거나, 합의하에 촬영했다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하여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case1** 대학생 A는 우연한 기회에 같은 학과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다. A는 이 단톡방 대화 내용에 자신을 포함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성적 묘사, 성관계 묘사, 성적 비하 발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평소 학과에서 예의 바른 태도로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남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어 더욱 놀랐다. 단톡방에 실명 거론이 된 피해 여학생 몇 명에게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배에게도 의논하였다.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상담을 신청하였다.

**case2** O○대학에서는 동아리 남학생들이 소속된 단톡방에서 “주물럭 하고 싶어”, “청바지 입고 오는 날 일부러 옆에 가서 비빔”등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하며,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ase3** 학생 C는 동아리 활동 중에 학생 K의 사진을 찍어 동의 없이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한 후, 학생 K에게 해당 사진과 함께 “네 사진 보면서 하고 있다”, “너도 느껴봐라”, “나랑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03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주체별 예방

###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성인지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특히 여성과 남성에게 따라, 세대 차이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성희롱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오해가 있었으며,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왜곡된 성의식과 철학 없는 무의식적인 관행으로 유발될 수 있는 폭력이기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희롱의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인식을 버리고 보다 평등한 젠더감수성을 갖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2016).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강캠퍼스」)

### 1. 기관장

- 1) 법정 예방교육 시행 철저
- 2)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 3) 발생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객관적 판단 관리 감독
- 4) 피해자의 2차적인 불이익 방지조치
- 5)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2. 교수, 직원

- 1)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성 통념을 버리고 젠더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①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 ②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지침을 숙지합니다.



2) 지위고하, 관계대상을 막론하고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① 강의, 일상적인 대화 등에서 평소 성별고정관념이 함의된 발언, 성차별적인 발언,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발언 등을 하지 않습니다.(예: 여학생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환하네요, 남자가 쩌쩌하게 그러면 안 되죠).
- ② 상대방(학생, 조교, 동료 등)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질문과 말은 하지 않습니다.
- ③ 학생, 조교 등과의 1:1 만남은 공개된 자리에서 갖도록 합니다.
- ④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학습지도, 업무를 핑계로 한 스킨십, 회식자리 등).
- 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업무 등을 지시 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⑥ 선한 의도의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업, 업무와 무관한 성(性) 관련 언행은 수강생, 동료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성희롱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자신의 회법, 교수법, 농담 등을 항상 점검합니다.

### 3. 학생

1)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성 통념을 버리고 젠더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①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 ②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지침을 숙지합니다.

2) 지위고하, 관계대상을 막론하고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① 자신의 지위나 권한(학생회장 등)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합니다.
- ②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질문과 말(연애, 성적인 내용 등)은 하지 않습니다.
- ③ 상대방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폄평하지 않습니다.
- ④ SNS, 단톡방 등에서도 성적인 이야기나 농담,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3) 신입생 환영회, MT, 농활, 학과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①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게임(여장대회 등),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게임은 지양합니다.
- ② 취한 학우가 있다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③ 격려, 응원의 신체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숙지합니다.
- ④ 학생회, 학과 등 자치기구별 성평등 자치규약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도 성평등한 학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도 동의했는걸요?

- ❖ 가해 행위자는 자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상대 역시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상대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물어 동의를 구한 것인가요? '상황적으로 그러한 의미였다', '상대방이 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 등을 미루어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의 의사와 동의를 직접 명확하게 구해야만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는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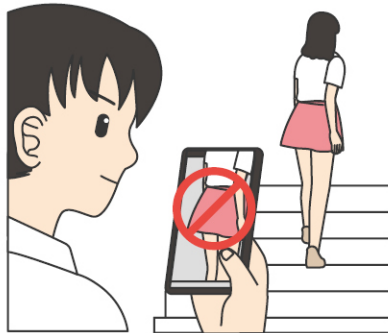
- ❖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성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는 가해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성폭력인가요?

- ❖ 성폭력은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성적인 불쾌감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단 1회 뿐이었는데 성폭력인가요?

- ❖ 단 1회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행동과 상황을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폭력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 04

##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별 대응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각각의 대응방법을 살펴본 뒤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방법으로는 ① 당사자 간의 해결(합의조정) ② 학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른 처리 ③ 비사법적 대응(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대응) ④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 등이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내의 성희롱 고충상담기관(교내: 성평등센터, 교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1. 성희롱

- ✔ 성희롱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 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 전달은 이후 법적, 제도적 절차 시 도움이 됩니다.

- ✔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목격자, 증거,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하게 기록해 둡니다. 가해 행위자와의 SNS 대화내용,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내역, 목격자나 증인의 서면(또는 녹음) 증언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 ✔ 신뢰할 만한 주변인들과 함께 대응합니다.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주변인(친구, 선배, 교수, 가족 등)과 상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 ✔ 학내 성평등센터 또는 외부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대응방법이 최선인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학내 성평등센터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외부지원기관의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대처방안을 모색합니다(상세 사항 p.19~23 참조).

## 2. 데이트 성폭력

### ✔ 나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로 행동(성관계, 키스 등)을 '원하는지' 나의 욕구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NO'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통제, 감시 등이 폭력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통제와 감시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컴퓨터 계정, 개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사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 ✔ 신뢰관계에 있는 주변인, 가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폭력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협박 등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받는 것에서 보호받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사건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어떤 부분에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원한 것이었는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등). 신체에 생긴 멍, 생채기 등 외상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는 공식적인 사건조사가 진행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학내 성평등센터 또는 외부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겪은 것이 어떤 것인지, 사건해결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거나 결정하기 힘들 때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상세사항 p.19~23 참조).

### 여기서 잠깐!

데이트 폭력은 여전히 연인 간의 '사랑싸움' 짬으로 생각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용서해주면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은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폭력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3. 스토킹

✔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 주변의 24시간 상점이나 경찰서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 가해 행위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안장치 등을 철저히 해두며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행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이나 이동 경로 등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되, 가해자와 따로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한번만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전달하고 그 외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이 가해 행위자라도 설득하거나 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은 어떤 식으로든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반응을 보이게 되면 스토킹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두고, 해당 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와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로부터 받은 편지, 메일,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주변인, 가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위협적인 상황에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주변 지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교내외 기관(경찰신고, 교내 성평등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해 행위자의 행동이 과해진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내 성평등센터의 상담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p.19~23 참조).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피해자 유의사항

1. 관련 증거자료를 무리해서 수집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의 열람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해 행위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쾌감의 표현을 위한 접촉 외에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가 가해 행위자의 언행을 학내 게시판 등에 글로 올리는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했다더라도 성립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가해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4. 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 ☑ 사이버 성폭력이란?

카메라, 핸드폰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신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 ☑ 사이버 성폭력 가해행위별 유형

유형	적용법률	예시
촬영	성폭력처벌법제14조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li> <li>• 성행위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li> </ul>
유포	성폭력처벌법제14조1항~3항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li> <li>•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배포</li> <li>•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li> </ul>
재유포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li> <li>•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li> </ul>
유포협박	형법 제30장(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li> <li>•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연인과 결혼 후 협박</li> <li>•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li> </ul>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정보통신망법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li> <li>•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li> <li>• 게임 내 성희롱</li> <li>• 단독방 내 성희롱</li> </ul> <p>☞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SNS, 단독방 등에 상대방의 유무와 관련 없이 성폭력이 인정됩니다.</p>

(출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외(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서울특별시)

### ☑ 사이버 성폭력 대처

사이버 성폭력 범죄이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가급적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 가해 행위자가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 직접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시간이 지연될수록 유포 범위가 커지니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방문 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당면한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해두되, 어떤 부분에 명확히 동의하였고, 원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또 단톡방, URL 등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은 증거 자료(본인임을 알아 볼 수 있는 부분), 증인들의 증언기록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 행위자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사진, 영상의 경우 개인적인 소장까지도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 등에 게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주변인, 가족, 교내 성평등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단톡방 등에 함께 있던 경우 폭력에 대해 증언과 증거자료 수집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 직접 찾아내려고 하기 보다는 심신 안정을 위해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내 성평등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p.19 “학내 성평등센터를 통한 대응” 참조).

여기서 잠깐!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반드시 주변인, 기관,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파급력이 큰 만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주변인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 02-735-8994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 지원내용: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연락처: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 상담시간: 평일 13:00~17:00

지원내용: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연계지원 등



## 5. 성폭행(강간 및 강제추행)

- ✔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가해 행위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해야 하며, 지인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 ✔ 교내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호(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폭행(강간) 피해가 의심되면 몸을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행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교내 성평등센터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사건 현장을 보존해 두고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현장을 보존할 수 있다면, 가급적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현장에 남겨진 가해자 머리카락, 음모, 피해 당시 입었던 옷 등은 '종이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생긴 멍 자국, 상처 등 외상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찍어두고, 가해자의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태도, 대응방법 등 사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 ✔ 사건 처리 방법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교내외 전문기관(교내 성평등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사법적, 비사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p.19~23 참조).



# 05

## 학내 성평등센터를 통한 대응

성평등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을 하고자 할 때 혹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한국외국어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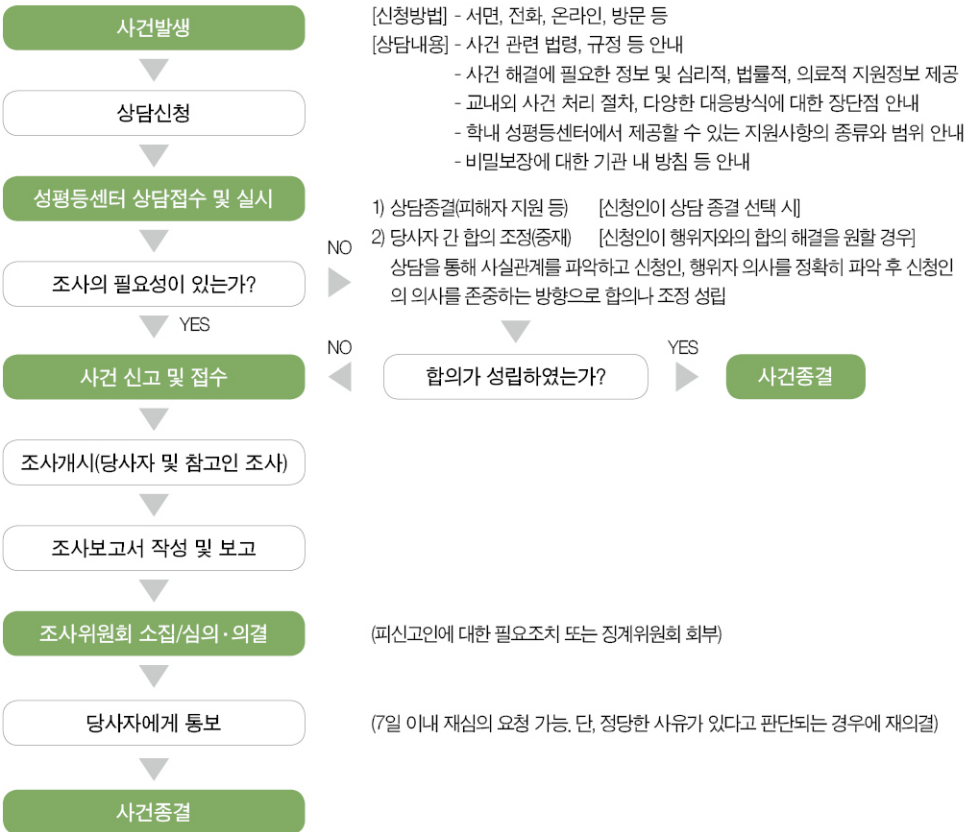
### 1. 성평등센터에서 하는 일

-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폭력에방교육 등

### 2. 성평등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서울캠퍼스: 학생회관(국제학사) 346호 / 02-2173-3526(이용시간 월~금 9:00~12:00, 13:00~17:00)
-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2층 201-2호 / 031-330-4465(이용시간 월~금 09:30~12:00, 13:00~17:30)
- 홈페이지: <http://gec.hufs.ac.kr>, 이메일: [gec@hufs.ac.kr](mailto:gec@hufs.ac.kr)

### 3.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① 성평등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신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센터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시간예약 - 상담
- 전화신청 : 시간예약 - 센터방문 - 신청서 작성 - 상담
- E-mail신청 : gec@hufs.ac.kr로 신청 - 시간예약(센터에서 연락) - 센터방문 - 상담
- 온라인 상담(신고) 신청 : 온라인 신청 - 시간예약(센터에서 연락) - 센터방문 - 상담  
(온라인 상담(신고) URL: <https://wis.hufs.ac.kr/jsp/HUFS/gec/step1.jsp>)

## ② 상담

- 내담자(피해자)는 상담연구원과 예약일정에 상담을 하게 되며, 상담연구원으로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센터는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청하고 내담자(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③ 신고/접수

- 사건 신고는 상담 후 내담자(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조사를 원하는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사건 신고서를 서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서명날인 후 제출).
- 신고서 제출 이후 내담자(피해자)는 신고인이 됩니다.
- 신고인 측의 사건 신고서, 서면진술서, 증빙자료 등이 제출되면 신고한 것(신고일)으로 보는데, 이 신고일은 사건접수 후 심의까지의 기간을 세는 기산점이 됩니다.

## ④ 조사

- 조사는 상담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조사 시 피해자, 가해 행위자, 제3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문답요구, 사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조정(중재)

- 당사자 간 조정(중재)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사과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정(중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 조정(사과문, 재발방지서약, 접근금지 등)을 통해 징계,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⑥ 조사위원회 소집 및 심의의결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이 결렬되는 경우, 심각하고 상습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 조사위원회 회의에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조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⑦ 조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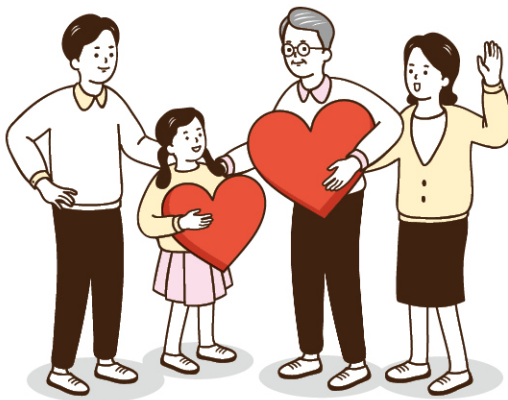
- 사건이 성폭력으로 의결되어 징계요청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 조사위원회는 필요 시, 피신고인에게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 ⑧ 결정사항 통지

- 성평등센터에서는 사건관련자에게 조사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 여기서 잠깐!

사건 대응방안 검토 시,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성평등센터 자문변호인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인단은 우리대학 출신 변호사 총 13명 이내로 구성되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성평등센터 홈페이지(<http://gec.hufs.ac.kr>)를 참고하여 주세요.



# 06

##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및 지원기관

학내 성평등센터를 통한 대응 외에도 아래의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비사법적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

-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제신청 등 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문서, 우편, 구두, 온라인  
(<https://www.moel.go.kr/policyinfo/sexual/regist.do>)으로 가능합니다.

✔ 교육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bit.ly/2FAOjFZ>).

### 2. 사법적 권리구제

✔ 민사적 대응 : 변호사 선임·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공판절차

-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 즉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또는 소송 대  
리인을 선임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적 대응 : 경찰수사·검찰수사·공판(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  
에 요구하는 과정으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주체로 직접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  
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 3. 외부 지원기관

#### ☑ 긴급전화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a href="http://www.women1366.kr">http://www.women1366.kr</a>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폭력 및 범죄 상담	(국번 없이) 112

#### ☑ 해바라기센터(서울, 경기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02-735-7510	<a href="https://www.stop.or.kr">https://www.stop.or.kr</a>
서울대병원	통합형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지하 101호	02-3672-0365	<a href="http://www.help0365.or.kr">http://www.help0365.or.kr</a>
경찰병원	위기지원형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02-870-1700	<a href="http://www.smonestop.or.kr">http://www.smonestop.or.kr</a>
보라매병원	위기지원형	서울 동작구 보라매길 39 희망관 2층	02-3400-1117	<a href="http://www.smonestop.or.kr">http://www.smonestop.or.kr</a>
삼육서울병원	통합형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02-3390-4145	<a href="http://snsunflower.or.kr">http://snsunflower.or.kr</a>
국립중앙의료원	통합형	서울 중구 을지로 245	02-2266-8276	준비중
아주대병원	통합형	경기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	031-215-1117	<a href="http://www.ggsunflower.or.kr">http://www.ggsunflower.or.kr</a>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전국 38개 센터가 있습니다(2018.05기준).

#### ☑ 주요 성폭력 상담기관 및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02-338-5801	<a href="http://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a>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서울 은평구 진흥로 16길 8-4	02-2263-6465	<a href="http://hotline.or.kr">http://hotline.or.kr</a>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02-335-1858	<a href="http://womenlink.or.kr">http://womenlink.or.kr</a>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4번지	02-883-9281	<a href="http://www.rape119.or.kr">http://www.rape119.or.kr</a>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 3가 86번지	02-953-1504	<a href="http://www.iffeminist.or.kr">http://www.iffeminist.or.kr</a>
장애여성공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02-441-2384	<a href="http://www.wde.or.kr">http://www.wde.or.kr</a>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 용인 기흥구 갈곡로8번길 11	031-281-1366	<a href="http://www.yhotline.com">http://www.yhotline.com</a>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02-817-7959	<a href="http://www.cyber-lion.com">http://www.cyber-lion.com</a>

\* 성폭력 피해상담소는 성폭력 상담, 교육, 쉼터연계,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국 168개소가 있습니다(2018. 05 기준).

#### ☑ 무료법률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a href="http://www.klac.or.kr">http://www.klac.or.kr</a>
대한헌법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a href="http://www.legalaid.or.kr">http://www.legalaid.or.kr</a>

# 07

## 피해자 주변인, 교수 역할

### 1. 주변 지인의 역할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합니다.
- 피해자 심리 치유 상담이나 성평등센터 조사에 동행하거나 증거 수집을 도와야 합니다.
-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 학과나 동아리, 학내에 관련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해들은 이야기라도 직접적으로 혹은 SNS를 통해 타인과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나 가해 행위자와 관련된 소문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의 메시지를 가해 행위자에게 전달하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짧고 명확하게 전합니다.
- 필요 시 피해자의 이동 및 귀가에 동행해 줍니다.
-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을 때는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말해도 괜찮은지 먼저 묻습니다.
- 피해 목적 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즉각 가해를 중단시킵니다.
- 피해자가 동의 한다면 제3자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학과 교수의 역할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합니다.
- 사실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를 함께 만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 가해 행위자와 공간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이야기를 꺼내거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가해 행위자를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난이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 문제를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나 화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특징, 피해, 후유증,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2차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나 주변인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2차 피해와 예방

### 1. 2차 피해 정의

2차 피해란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학습·업무 등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가해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2차 피해 유형

#### 1) 가해행위자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만들고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2)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SNS 등)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가해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3) 사용자·관리자·상담자 등

- 사건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가해 행위자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3. 2차 피해 대응

- 성희롱, 성폭력 문제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처방식이 사건 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 피해자를 대할 때

-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든다는 식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니? 등).
- 가해 행위자의 행동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 신체접촉하기 전에 의사를 물어보세요.
-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의논하며 함께 동행해주세요.
- 분노, 고통, 슬픔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피해자다움’이란 없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마세요.

#### ✔ 가해 행위자를 대할 때

- 가해 행위자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감싸지 마세요.
- 반성의 의지를 보일 때,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희롱, 성폭력 여부에 대해 잘못된 통념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피해자도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서, 똑같이 잘못 아니니? 등).
-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위로, 변명한다고 가해자의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 가해 행위자 책임을 줄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 함께 책임질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보세요.



# A Brief Manua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 Report sexual harassment damage and case processing on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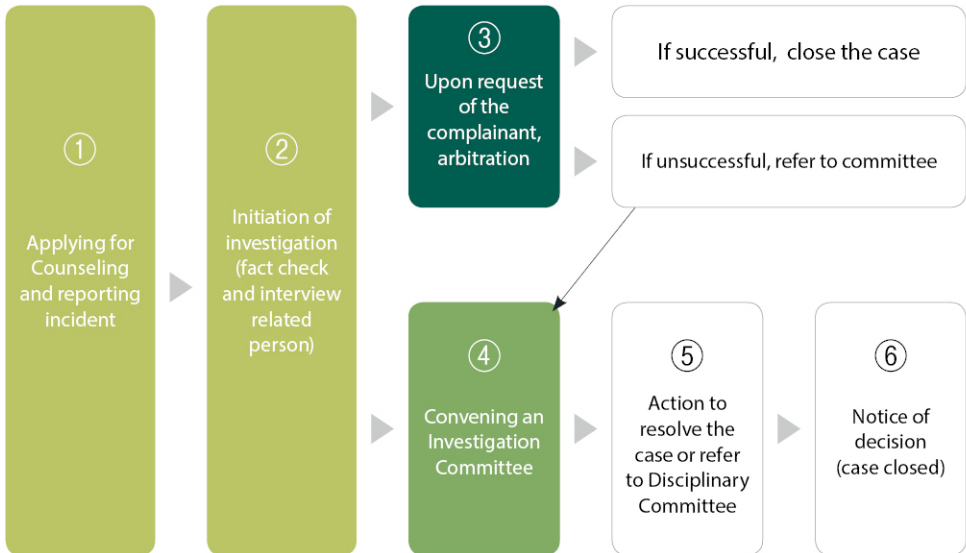
### 1. Organization : Gender Equality Center

#### 1) What we do

- ① Provide supportive counseling services for the complainant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② Receive and process reports from complainants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③ Educate and advertise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 2) Location and Contact

- ① Location - Seoul Campus : Student Hall and GlobeeDorm 346, 347 / 02-2173-3526  
- Global Campus : Student Hall 201-1, 2 / 031-330-4464
- ② Homepage : <http://gec.hufs.ac.kr>
- ③ E-mail : [gec@hufs.ac.kr](mailto:gec@hufs.ac.kr)
- ④ Hours : (Seoul Campus) Monday~Friday 9 AM~ 5 PM  
(Global Campus) Monday~Friday 9:30 AM~ 5:30 PM



## ☑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 sexual violence

### 1. Sexual Harassment

- 1)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 of sexual offense, sexual harassment is an act that causes shame or disgust, and its standards are based on the rational and subjective judgment of the victim. Sexual harassment includes sexual behaviors and requests that the other person disagrees with, and acts that violate one's sexual autonomy through verbal, mental, and physical acts.
- 2) Sexual harassment within a university means that professors, faculty members, or students in an education, work,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s make the other person feels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using their status. And this also means giving the person disadvantages of education or employment for reasons of refusal to sexual behaviors or other demands.

### 2. Sexual Violence

- Sexual violence refers to any physical, linguistic, or mental violence that is committed against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such as rape, forced harassment, verbal sexual harassment, candid shot.

### 3.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1) The Criminal Law
- 2)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 3) Sexual Equality Employment Act
-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2, Section 2
- 5)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

### 4. The Criteria of sexual harassment

- 1) Judge whether sexual harassment
  - ① When judging sexual harassmen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victim, but if a rational person is a victim based on social common no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judge and respond to the behavior that is problematic. As a resul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will reduce the efficiency of work and learning by forming hostile and threatening environment.

## 2) Subjective perspective of the victim

- ① Based on the victim's point of view, judge whether or not the victim wanted the action. At this time, motives and intentions of actor are not important.
- ② Even if the action was a expression of intimacy, sexual harassment could be considered if the other person felt sexual humiliation or disgust.

## 3) Other considerations

- ① Sexual harassmen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repetitive or continuous, and only one sexual behavior can be judged by sexual harassment.
- ② Even if the victim does not express the intention of denial, it can be considered sexual harassment if it is judged by objective circumstances that it is not actually wanted.

## ✔ Preventive Measures

### 1. As an individual

- 1) Remember that sometimes the other party may not express discomfort even if they do not like it
- 2) Bear in mind that many sexual assaults may occur when self-control was weakened due to factors such as drunkenness
- 3) Check yourself that your actions or habits do not cause sexual shame or insult to the other party
- 4) The body is part of the dignity of another person. Thus, have respect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others
- 5) Remember silence is not consent, and accept refusal even though it may be expressed indirectly

### 2. As the director of a Group

- 1) Educate thoroughly abou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in advance
- 2) If somebody gets drunk during a MT or drinking together, designate a person to safely care for that person
- 3) Ensure that excessive physical contact or making unreasonable demands do not occur in order to lighten the mood of the gathering

## ✔ If Sexual Violence has occurred

1. Avoid the thought that "it was my mistake"
2. Notify your acquaintance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HUFS Gender Equality Center,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ect.) of the incident and seek for help

- 1) On campus: Gender Equality Center (Seoul : 02-2173-2559, Global : 031-330-4466)
  - 2) Off campus :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02-338-2890), ect.
3. Record all the details of the incident and collect evidence
  4. Be aware of emotional changes caused by the damage and consider the desired solutions
  5. In urgent crisis situations, immediately call the police and go to medical institutions
    - 1) If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crisis such as rape, serious sexual harassment, or assault, immediately contact the police (112) or a Female Emergency Number (1366).
    - 2) If evidence of sexual violence is needed, contact local Sunflower Center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02-3672-0365 / north of Seoul: Sahmyook Medical Center 02-3390-4145) without washing own body. And keep clothes and evidence in a paper bag

### ✔ In the case that I witness a sexual assault

1. Do not spread ridiculous comments or biased rumors about the case
2. Avoid secondary assault by trying to cover up the case or criticizing the victim
3. Recognize that the concerned parties' personality and sexual harassment are separate issues
4. Recognize and support that courageous problem-awareness or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mature community culture

### ✔ Response through external organization and supporting organization

1. Non-judicial rights relief
  - 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1331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relationship) : 1350
    - \* Anonymous reporting is available : <https://www.moel.go.kr/policyinfo/sexual/regist.do?>
  - 3) Online Report Center of Ministry of Education : <http://bit.ly/2FAOjfZ>
2. External support organization
  - 1) Emergency call
    - ① Female Emergency Number : **1366**  
(open 24 hours a day, 365 days a year / rescue, protection, consultation, etc)
    - ② Crime report : **112**

2) Sunflower Center(Seoul) : 365 days and 24 hours consultation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 Medical, legal, investigative support

①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02-3672-0365

② National Police Hospital : 02-3400-1117

③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 02-870-1700

④ Sahmyook Medical Center : 02-3390-4145

3) Sexual violence counseling organization : Crisis counseling and continuous counseling, Free legal support / Accompany when there are investiga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aminations of a witness in the court / Linked to medical institutions and local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①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02-338-5801~1, <http://www.sisters.or.kr>

② Korean WomenLink : 02-739-1858, <http://womenlink.or.kr>

③ Korea Women's Hot Line : 02-2263-6465, <http://sv.hotline.or.kr>

④ Korean Feminist Counseling Center : 02-953-1504, <http://www.iffeminist.or.kr>



#### 〈참고문헌〉

교육부(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2016).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강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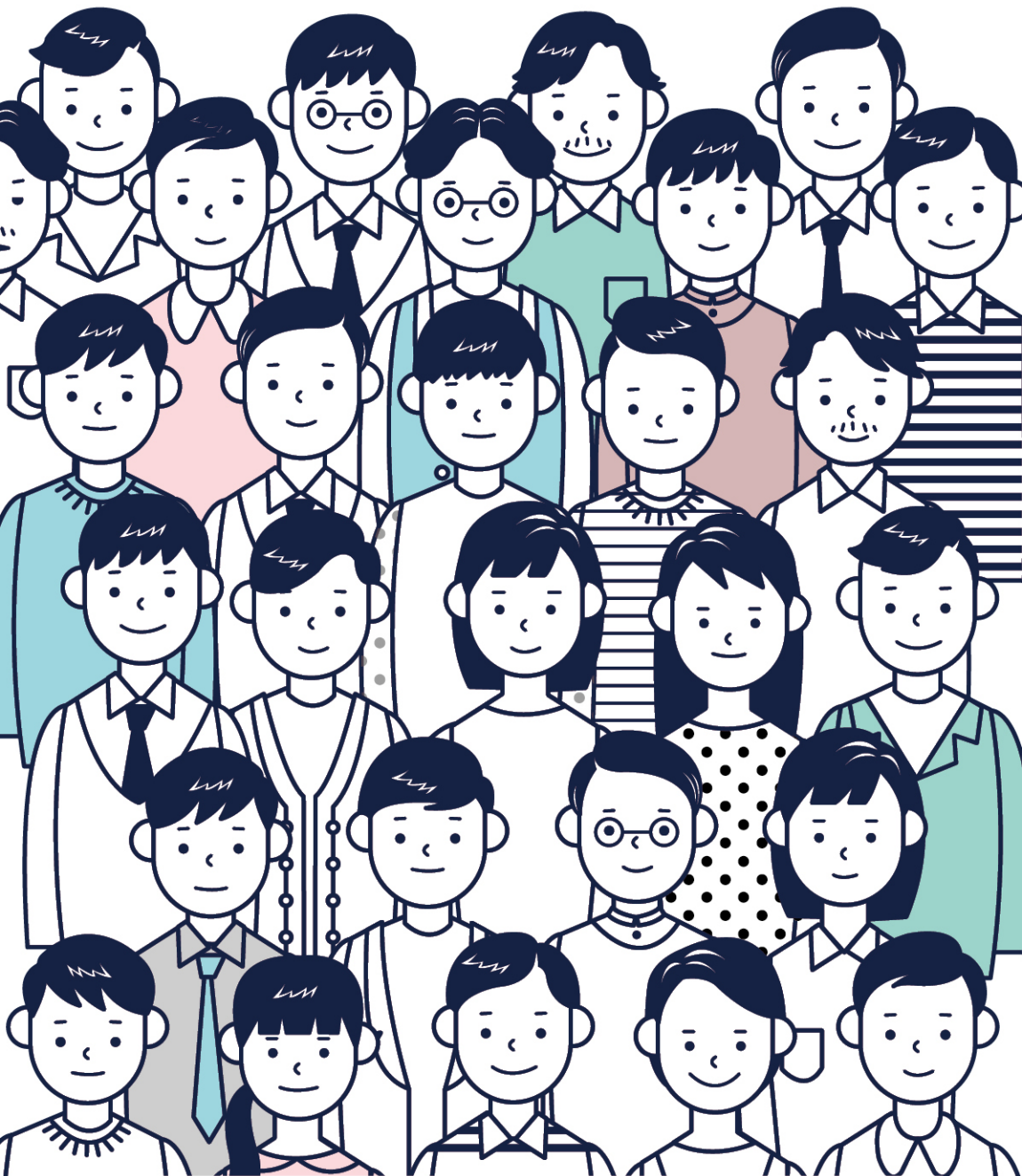
여성가족부(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이화여자대학교 양성평등센터(2016). 성평등한 이화 함께 만들어가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2014).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2017).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자료)(영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서울캠퍼스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3526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464

홈페이지 <http://gec.hufs.ac.kr> E-mail [gec@hufs.ac.kr](mailto:gec@hufs.ac.kr)